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23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후시설 사업 발굴해 건설경기 활력”

도건설협회·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 투자정책연구 세미나

도내 인프라 투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23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회가 지난해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강원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의뢰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프로젝트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연구원은 도내 인프라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발표를 맡은 한영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일반 도로를 비롯한 상수관로, 문화시설

등의 노후화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조례 제정과 지역 내 핵심 인프라사업 발굴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인철 회장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는 인프라 공급 불균형과 노후화를 초래해 도민 생활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프라 투자 정책을 적극 활용,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생활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 2018.4.24(화) 강원도민일보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3일 강원연구원에서 도내 건설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원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노후 교량과 터널은 2025년까지 각각 883개소, 34개소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는 전체 연장대비 35.8%며 누수율 또한 전국 평

균 10.9%보다 높은 20% 수준을 기록했다. 하수관로 보급률도 2015년 기준 74.4%로 전국 13위 수준이며 노후하수관로도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55.9%가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도운

아하! 그렇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 제한의 예외

Q A사는 대규모의 냉난방시스템 장치 설치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 설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도 수반되므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전문공사업 등록과 더불어 전기공사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아파트형 공장 1동에 대한 냉방시스템 장치 설치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수주하였는바, 본건 공사를 B사에 대부분 하도급주면서 그중 전기공사 부분은 분리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C사에 하도급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본건 공사를 위와 같이 분리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에 위반되는지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일괄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2인 이상에게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허용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공사를 구성하는 기계설비공사와 전기공사 부분을 나누어 2개의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는 위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①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위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

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를 통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기공사는 위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③따라서 본건 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기계설비공사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분리해서 하도급하더라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무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전기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므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1개의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